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단237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356,1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5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556,1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5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E 주식회사는 2014년경 D을 상대로 ‘26,102,7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4.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92772 구상금)은 2015. 9.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2019. 7. 19.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20. 12. 10.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2021. 1. 18. 위 각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소외 G은 2016. 8. 20.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아들들인 피고(장남), D(차남), H(삼남)이 있는데, 각 법정상속분은 1/3이다(이하 위 G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 D, H은 2016.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2. 21. 소외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7. 2. 10. 위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다.

마. 한편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채무관계는 자세히 알 수 없었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상속비용을 제한 나머지 3,000만 원 중 D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1,0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184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은 1998년 D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외 E주식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된 구상금채권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2005년경 관련 판결이, 2015년경 관련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는 등 그 채권자가 오랜 기간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해오던 것인바, D은 위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을 피할 유인이 충분하였던 점, ②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적지 않은 가액의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는 D의 친형으로서 D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 피고는 2017. 2. 18. D의 계좌가 아니라 처인 J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D이 2017. 2. 18.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준 점(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공동명의로 두더라도 그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D에게 지급된 1,00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5,000만 원 중 D의 지분 해당액 12,689,444원[= (5,000만 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331,668원 - 망인 장례비용 9,600,000원) × 1/3]에 다소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나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상속지분 상당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17,356,110원[=(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64,000,000원 - 2,331,668원 - 망인 장례비용 9,600,000원) × D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가 취득한 이익 또한 같다.

(1)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64,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2,331,668원이었다.

(3)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9,6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¹⁾ (한편 피고는 2016. 7. 26.

사망한 모친 K의 장례비 9,600,000원도 상속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K의 장례비를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21,141,833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17,356,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D의 처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 중 D 몫의 정산금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D의 책임재산의 원상회복의 일환이므로, 위 1,000만 원을 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356,11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5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충청남도 금산군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세멘블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농가 72.22㎡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스테트지붕

단층 농생 96.49㎡

[토지]

충청남도 금산군 대 227㎡

2.

[토지]

충청남도 금산군 대 351㎡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등 참조).